

Legislation



미래를 여는 희망과 감동의 의회

의정정보

2013-8호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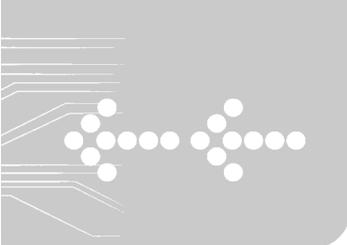


Parliament
Information

Chungnam
Council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의정정보

2013-8호

1. 타 시·도 의회 주요 동향 3
2.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9
3. 최근 제·개정 법령 31
4. 해외 지방의회 주요 사례 41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041)635-5121

▶ 타 시·도 의회 주요 동향

1. 서울특별시의회(7)
2. 대구광역시의회(8)
3. 인천광역시의회(10)
4. 광주광역시의회(12)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13)
6. 경기도의회(14)
8. 강원도의회(16)
9. 전라남도의회(17)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6건)

1.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23)
2.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24)
3.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25)
4.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26)
5.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27)
6.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28)

▶ 최근 제·개정 법령 (4건)

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35)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36)
3. 지진재해대책법(37)
4. 농촌진흥법(38)

▶ 해외 지방의회 주요 사례

- 외국 선진 지방의회 보좌인력 및 인사권 운영 사례(43)



타 시·도 의회 주요 동향



타 시·도 의회 주요 동향

1. 서울특별시의회(7)
 - 서울시의회, 장기 기증자 예우 강화 방안 추진
2. 대구광역시의회(8)
 - 대구시·경북도의회 “취득세 인하 철회하라”
3. 인천광역시의회(10)
 1. 인천시의회, 노숙자 자립 지원조례 만든다
 2. 인천시의회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 발의
4. 광주광역시의회(12)
 - 대법원, 광주학교자치조례 재의결 효력 집행정지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13)
 - 세종시의회 “UN 산하기관 세종시에 설치”
6. 경기도의회(14)
 1. 경기도의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강화' 조례 추진
 2. 경기도, 내년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 추진 논란
7. 강원도의회(16)
 - 강원도, '무상교복 조례안' 논란
8. 전라남도의회(17)
 - 전남도의회 “전남에 의대 설치해달라”



1. 서울특별시의회

1. 서울시의회, 장기 기증자 예우 강화 방안 추진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 서울 거주민 중 장기기증자에 대하여 각종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 등 감면 혜택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 거주민 중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는 김용석 의원(민주당, 도봉1)이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8월 14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장기기증자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립 장사시설의 사용료, 의료시설의 진료비, 각종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준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장기이식대기자 수는 해마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장기기증자는 크게 부족해 수급불균형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3월 말 기준 서울시의 장기 등 이식대기자는 5547명인데 반해 지난 한 해 동안 장기등 기증자는 불과 586명에 불과해 장기기증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시사점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도에서도 장기 기증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

2. 대구광역시의회

1. 대구시·경북도의회 “취득세 인하 철회하라”

대구시·경북도의회, "취득세는 광역정부 세원의 50%, 지방정부 전체 재정의 26% 이상 차지하는 자치재정의 근간"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주택거래 취득세율 인하 방침 철회 촉구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 대구시의정회, 경북도의정회,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는 7월 31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상의도 없이 주택거래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취득세 인하 방침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기관과 단체는 이날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득세의 과세권자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시·도 광역정부이며, 각 광역정부의 50%, 지방정부 전체 재정의 26% 이상 차지하는 자치재정의 근간"이라며 "중앙정부가 지방의 이런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 조치라며 취득세 인하 방침을 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분을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확대·인상, 지방소비세 비율 상향 조정 등으로 해결하려는데 대해서는 "지방소비세가 신설된 2010년에 이미 비율을 높이겠다고 약속한 방안을 지금껏 이행하지 않다가 취득세율 인하를 발표한 시점에 대안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지방민과 지방정부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몰아붙였다.

이재술 대구시의회 의장은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대구 세수의 33%를 차지하는 취득세를 줄이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송필각 경북도의회 의장은 "정부가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불명확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보장이 안되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취득세 인하 방침은



52%의 취득세에 의존하는 경북도를 죽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기관과 단체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지방 배분비율을 높이면 국세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감축된 재원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 시사점

우리도에서도 지방재정 세원의 50%를 차지하는 취득세를 인하하는 방침에 대하여 대응 방안 준비

3. 인천광역시의회

1. 인천시의회, 노숙자 자립 지원조례 만든다

인천시의회, 노숙인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주요 사업계획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급식·고용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 복귀를 유도하는 조례 제정 추진

인천시의회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 조례안은 인천시가 노숙인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주요 사업계획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규정했다. 또 노숙인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시가 노숙인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해 급식 서비스, 의료지원 서비스, 고용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토록 했다.

노숙인이 자립 기반을 마련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이번 조례안의 가장 큰 목적이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동수(민·남동3) 의원은 “조금만 도와주면 얼마든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노숙인들이 많다”며 “이들에게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고,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취지가 크다”고 말했다.

➔ 시사점

노숙인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우리도에서도 예산지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노숙자 자립 지원 조례 제정 검토



2. 인천시의회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 발의

인천시의회, 이·미용업이나 관련 서비스 산업, 화장품 등의 제조·개발과 성능 향상에 관련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

인천시의회가 신성장동력산업인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이 조례안 제안 이유에서 신성장동력산업 중 하나인 뷰티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뷰티산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이용업과 미용업이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과 부자재 등의 제조·개발과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도 뷰티 산업이다.

또 인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도 포함된다.

시의회는 조례안에서 인천시가 뷰티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 산업 인력을 양성하도록 규정했다.

뷰티산업 제품이나 브랜드를 개발하고 홍보활동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뷰티서비스 품질향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업체는 '선도뷰티업체'로 지정해 지원과 육성을 할 수 있게 법령을 마련했다.

→ 시사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신성장동력산업인 뷰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검토

4. 광주광역시의회

1. 대법원, 광주학교자치조례 재의결 효력 집행정지

대법원, 교육부가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광역시 학교자치 조례’의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조례의 일부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신청의 취지에 이유가 있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기로 결정

학교 운영의 민주화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조례가 시행을 목전에 두고 암초를 만났다.

대법원 1부(재판장 김창석)는 8월 28일 “교육부가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광역시 학교자치 조례’의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조례의 일부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신청의 취지에 이유가 있으므로 광주시의회가 행한 재의결의 효력을 본안 판결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9월1일 시행될 예정이던 광주학교자치조례의 집행이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학교자치조례의 시행에 따른 자치기구 구성 등을 유보하라고 각급 학교에 공문을 전달했다. 시교육청 교육자치과장은 “지난 5월부터 교사회와 직원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선도학교 2곳을 지정하는 등 준비를 해왔지만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행을 유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학교자치조례는 지난해 6월 주민 1만7981명의 서명으로 발의돼 7개월 만인 지난 1월 광주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 날짜는 2학기가 시작 되는 9월1일로 명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조례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치기구를 두도록 규정해 학교장의 예산 편성권 등을 침해했다며 재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광주시의회는 지난 3월 “교육자치를 훼손하려 한다”며 찬성 19표, 반대 4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다시 통과시켰다. 조례가 재의결 되자 교육부는 지난 5월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광주학교자치조례의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1. 세종시의회 “UN 산하기관 세종시에 설치”

반기문 UN 사무총장에게 UN 산하기관 설치 협조 요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환준 의장은, 24일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만나 UN 산하기관의 세종시 유치에 대해 지원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환준 의장은 반기문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세종시는 수도권외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취지와 더불어 국제도시로서의 역할 및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건설되고 있다.” 며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대 대국으로 성장하는 등 국제적인 위상이 날로 높아지는 만큼,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 편중된 UN 산하기관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건설되는 세종시에 유치하여 세종시가 명실공히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 밝혔다.

6. 경기도의회

1. 경기도의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강화' 조례 추진

경기도의회, 어린이놀이시설이 '요수리', '이용금지' 판정을 받으면 수리·철거계획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고 접근금지 조치를 하는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오문식(새누리·이천1) 의원은 8월 14일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유치원·학교·학원 어린이놀이시설이 '요수리', '이용금지' 판정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수리계획서나 철거계획서를 작성해 교육장에게 제출하고 접근금지 조치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흡연·음주·자동차 주정차·노점상 행위 등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관리주체가 퇴장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점검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하지 않아 이용금지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의 82%가 방치될 정도였다”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 시사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시행 이후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리도에서도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놀이시설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이와 관련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검토



2. 경기도, 내년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 추진 논란

도 “재정난 어쩔 수 없는 일”
 도의회 “한 푼도 못 깎는다”

IMF 이후 처음으로 감액 추경을 준비중인 경기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심각한 재정난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주장에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의 역행이란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 방침에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8월 15일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도 재정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4년도 세출예산 가운데 5천300억여원을 삭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정부의 국비 지원에 맞춰 도비를 일정 비율로 투입하는 매칭사업(올해 예산 기준 2천238억원)과 도내 일선 시·군에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사업(597억원)도 포함됐다.

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 산하기관 재정 지원과 SOC사업, 민간지원사업 등 1천145억 원도 해당한다.

문제는 구조조정되는 세출 예산에 학생급식지원비 460억원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400억원 등 일명 무상급식 예산이 포함된 것이다.

도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이미 알려진대로 감액추경을 할 정도로 재정 사정이 녹록지 않은데다 당장 내년 세입이 올해 목표액보다 3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욱이 내년에는 복지예산·지방선거예산 등으로 3천303억원이 더 필요하다. 재정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라 세출 삭감은 어쩔 수 없는 교육지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민주당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인 무상급식 예산의 삭감을 용인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강득구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미 예견돼 왔던 재정난을 안일하게 대응한 김문수 지사와 집행부가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예산 삭감의 우선순위는 김 지사의 시책 사업이다. 시대적 요구인 무상급식 예산은 단 한 푼도 깎을 수 없다”고 말했다.

7. 강원도의회

1. 강원도 '무상교복 조례안' 논란

강원도교육청, 학생 교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출, 학부모연합회는 찬성 입장으로 조속한 조례 제정 촉구, 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상교복 추진은 다른 시급한 교육 예산의 희생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

강원도교육청이 '학생 교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강원도학부모연합회는 무상교복 조례에 대한 찬성 입장 표명하면서 조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강원도학부모연합회장은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정책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지 서명을 도내 모든 학부모로 확대해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도 성명서를 통해 무상교복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복은 중고교생들이 의무적으로 입어야 하는 학교생활 필수품인 만큼 당연히 무상으로 지원돼야 한다”며 “교복비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학부모의 고통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상교복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견이 부정적이다. 유창욱 교육위원장은 “학교 환경 개선과 교육 경쟁력 향상 등 시급한 교육 현안이 많은데 굳이 현 시점에서 무상교복을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교육위 소속 의원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무상교복 조례안은 2011년에도 제출됐지만 도의회의 거부로 무산됐다.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도 무상교복 조례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무상교복 추진은 결국 다른 시급한 교육 예산의 희생을 가져올 것”이라며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 시사점

자녀교육에 부담이 큰 학부모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도에서도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제정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



8. 전라남도의회

1. 전남도의회 “전남에 의대 설치 해 달라”

전남도의회, 교육부의 서남대 의대(전북 소재) 폐지 추진 방침에 맞춰 “의대 정원을 전남권에 배정하고, 의대를 설치해달라”고 요구

전남도의회는 “전남은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무(無)의대촌’인데다가, 전형적인 농어촌이 많은 탓에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의대 정원을 전남권에 배정하고, 의대를 설치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노인 인구와 농어촌 인구 비중은 노령화시대에 주로 발생하는 7대 만성질환 진료환자수를 전국 1위로 올려 놓았다”면서 “그 원인은 의료시설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또 “전남에는 일명 ‘화약고’로 불릴 정도로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여수산단과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잦은 대불산단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특성화된 전문 의료시설 부족으로 근로자와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의료소외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정부는 국가에게 보호의무를 부여한 헌법정신에 맞게 국민 모두가 균형있고 평등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면서 “전남도민이 바라는 의과대학의 전남유치는 취약한 의료서비스 구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달라는 당연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 5월 7일 지난해 실시한 감사결과 설립자의 교비 횡령과 부실 운영이 드러난 서남대 의과대학에 대해 폐지를 추진하되, 현재 진행중인 1심 재판 후에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서남대 의대 폐지를 기정사실로 한 상태에서 전남의 목포대, 순천대, 세한대와 전북의 군산대, 예수대 등 호남권 대학과 수도권의 1~2곳 대학 등 6~7곳이 의대 유치에 나서며 ‘의대 쟁탈전’이 가열되고 있다.



세계일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1990년부터 정부에 수십차례 의대 신설을 건의해 온 목포대는 지난해 3월부터 의대 유치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며 유치활동을 전개 중이며,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사립대인 세한대학교(구 대불대학교)는 재단 산하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목포중앙병원)의 의료인력 수급과 학교 위상 강화를 위해 의대 유치를 추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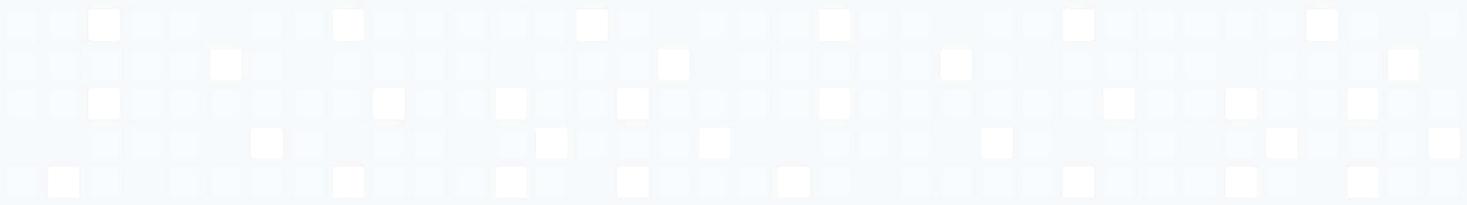
한편 전남지역 대학들의 이런 유치전에 대해 전북 지역민들은 달갑지 않은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남대 의대가 폐지되면 전남 지역 대학에 의대를 뺏겨서는 안된다는 여론 때문이다. 이에 전북 군산대도 학·처장단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의대 유치에 나섰다. 전주 예수대학은 부속 병원격인 예수병원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의대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시사점

우리도에서도 국립공주대와 협력하여 농어촌 지역인 내포신도시에 의료취약지역 특성화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활동 검토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 23
2.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4
3.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 25
4.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 26
5.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 27
6.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28



1.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제정) 2013-08-01 조례 제 5533호

1. 제정이유

- 서울시와 소속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이 모집, 채용, 전보, 승진, 복리후생 등 고용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근거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시와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고용상 차별 행위를 할 수 없음(제3조).
- 나. 시장에게 고용상 차별행위과 관련한 각종 행위금지와 시책 개발 책무를 부여함(제4조).
- 다. 직무의 특성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정년 등 합리적인 차별은 예외로 인정함(제6조6).
- 라. 고용상 차별행위 피해자의 상담신청 등 구제방법을 정함(제8조).
- 마. 시장에게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와 개선권고 권한을 부여함(제10조 부터 제11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 시사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우리도에서도 예산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제정 검토

2.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3-08-01 조례 제5552호

1.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 대해 다양한 혜택으로 예우하여 그 뜻을 기리어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기부금품 접수의 효율성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구체적 운영 방법 등을 새로이 규정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서울특별시시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함(제2조)
- 나. 시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기부증서 발급 및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 열람토록 할 수 있음(제4조)
- 다.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 “명예의 전당”에 명단 부착 보존 및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편의 제공(제5조)
- 라.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및 명예의 전당 등 기부자 예우 범위·방법 등 심의(제6~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시사점

기부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우리도에서도 예산지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검토



3.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제정) 2013-08-16 조례 제4207호

1. 제정이유

- 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함.

2. 주요내용

- 가. 안전도시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 나.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 다. 안전도시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부터 제9조)
- 라.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0조)
- 마.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시사점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도에서도 예산 지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안전도시 조례 제정 검토

4.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제정) 2013-07-30 조례 제382호

1. 제정이유

- 시민들의 재능나눔에 대한 관심과 수요증가에 따라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재능나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재능나눔의 기본 이념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조)
- 나. 재능나눔의 정의 및 유형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 다. 재능나눔 활성화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 시사점

시민의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우리도에서도 예산지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안전도시 조례 제정 검토



5.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제정) 2013-08-05 조례 제4595호

1. 제정이유

- 가. 최근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로 도민의 불안이 높아졌으나 사고로부터 도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남.
- 나. 따라서 경기도 차원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고예방과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도지사 및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도록 함(제3조)
- 나.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유해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제4조)
- 다.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정책과 시행계획에 대해 자문(제5조부터 제11조까지)
- 라. 유해화학물질 현황조사 및 공표, 위반사업장 공개로 주민의 알 권리 충족(제13조 및 제14조)
- 마.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실시 및 필요시 예산지원(제15조 및 제1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시사점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로부터 도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도에서도 예산지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제정 검토

6.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2013-08-02 조례 제 3663호

1. 제정이유

- 퇴학 및 미진학 등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청소년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대안교육 등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가. 강원도지사는 강원도교육감과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적, 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함(제3조)
- 나. 도지사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제4조)
- 다.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강원도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강원도청소년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음(제5조)
- 라.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6조)
 - 구 성 : 15명 이내(위원장 1명 포함)
 - 위 원 장 : 행정부지사(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임기 : 2년(연임 가능)
- 마.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8조)



바.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적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청, 청소년지원 관련 기관 및 사회단체, 대안교육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로 구성·운영할 수 있음(제9조)

사.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음(제10조)

아.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11조)

3.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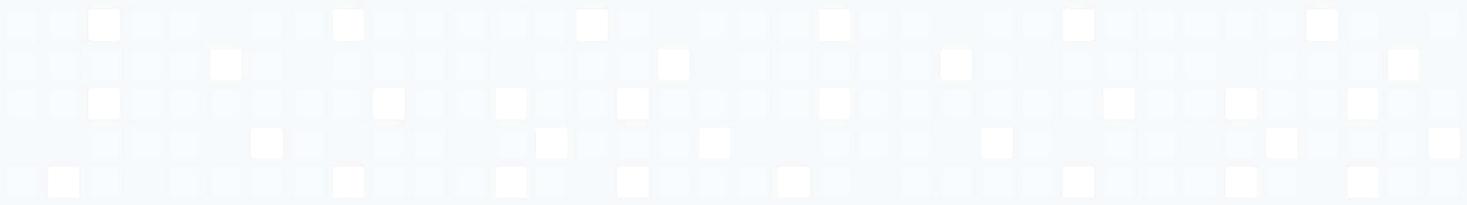
○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 시사점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도에서도 예산지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검토



최근 제·개정 법령



최근 제·개정 법령

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36
3. 지진재해대책법 ————— 37
4. 농촌진흥법 ————— 38



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8.29] [대통령령 제24545호, 2013.5.28.,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자립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영구임대주택과 30년 이상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을 수도권에서는 5퍼센트에서 8퍼센트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5조제2항제1호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8”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5”로 한다.

→ 시사점

도에서도 장애인·고령자 등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에 대하여 지속적인 노력 필요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08호, 2013.8.6,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생산하고도 자체적으로 시장의 유통망을 구축하기 어렵고, 민간 유통망 이용 시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한 수익률 악화로 시장진입이 곤란한 실정인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시설 등에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판매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전용매장 확대를 용이하게 하여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함(제3조)
- 나.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전용 판매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26조의2제1항 신설).
- 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전용판매장을 설치하는 경우, 입지여건, 판매공간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공간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시설이나 공간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제26조의2제2항 신설).
- 라. 중소기업청장은 전용판매장의 설치·운영을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제26조의2제3항 신설).
- 마. 중소기업청장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26조의2제4항 신설).

→ 시사점

도에서도 상기 법률에 착안하여 중소기업제품 유통망 개선 및 판로지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 필요



3. 지진재해대책법

[시행 2014.8.7.] [법률 제12001호, 2013.8.6,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최근 중국·일본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유례없이 심각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도 지진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예측불가능한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바, 국가차원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를 정하는 등 지진방재정책의 체계적 발전과 협력·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진해일에 대한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통해 지진해일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방재종합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제9조의2 신설).
- 나. 지진방재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진방재정책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3 신설).
- 다.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해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대피 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 라. 중앙대책본부장은 내진설계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4항 신설)

→ 시사점

상기 법률에 착안하여 우리도에서도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시·군의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지원을 위하여 전남·경북·강원도처럼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검토

4. 농촌진흥법

[시행 2014.2.14.] [법률 제12050호, 2013.8.13, 전부개정]

1. 개정이유

현행법은 지난 1962년에 제정된 이후 그 동안의 농업·농촌의 시대적인 흐름과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 및 농촌진흥사업의 다양한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국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추진내용 정비, 농촌지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반영 및 국격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하여 급변하는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농촌지역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농촌진흥사업을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으로 정의하고, 각 사업의 세부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제2조).
- 나.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함(제5조).
- 다. 농촌진흥사업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제6조).
- 라. 공동연구사업 수행기관의 구체적 명시, 연구개발사업의 중복성 방지, 사업의 효과적 추진 도모 및 성과의 이전·확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마. 농촌진흥청장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과학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현장 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9조).



- 바. 농촌진흥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북한 농업을 지원하거나 남·북한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 사. 농촌지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평가 및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아.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전문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농업인 등의 평생교육 기회 부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 자. 국제기구, 외국과의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협력국가 농업관련자 등에 대하여 연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 차. 농촌진흥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조사 업무에 대한 협조 의무, 사업 촉진을 위한 학술교류 활동 지원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 카. 농업기술실용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34조).
- 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되도록 하여 그 책무를 강화하도록 함(제35조 및 제37조).

→ 시사점

상기 법률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는 개정 내용에 따라 우리도에서도 농촌지도 시범사업 실시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 필요



해외 지방의회 주요 사례

이번 호에는 외국 선진 지방의회 보좌인력 및 인사권 운영 사례를 수록하였으며, 다음 호부터는 해외 지방의회 주요 사례를 매월 연재할 계획입니다.

해외 지방의회 주요 사례

외국 선진 지방의회 보좌인력 및 인사권 운영 사례

| | |
|-----------------------------|----|
| 1. 미국 | 45 |
| 1) 일반사항 | 45 |
| 2) 주-카운티-시 단위별 보좌지원과 인사권 운영 | 46 |
| ① 주(State) | 46 |
| ② 카운티(County) | 48 |
| ③ 시(City) | 48 |
| 2. 일본 | 50 |
| 1) 일반사항 | 50 |
| 2) 보좌기구 및 인력 운영 | 50 |
| 3) 인사권 | 51 |
| 3. 영국 | 53 |
| 1) 일반사항 | 53 |
| 2) 보좌기구 및 인력 운영 | 53 |
| 3) 인사권 | 54 |
| 4. 독일 | 55 |
| 5. 국가별 지방자치제도 및 의회운영 비교 | 56 |



1. 미 국

1) 일반사항

- 미국은 연방정부 형태를 띠고 있어 다양한 자치계층과 지방행정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음
- 주(州)헌법이 각자 존재하여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운영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보통 기관대립형인 의회-시장형은 주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나 25,000명 이하의 소도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음
- 미국은 일반적으로 주(state)-카운티(county)-시(city)의 3층제로 인식되고 있음. 단 카운티는 자치구역의 단위로 그 규모의 편차가 큰 편임

✿ 미국의 주의회 제도개혁

- 미국에서 주의회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전문성을 보좌하기 위한 지원인력이 확충되기 시작한 것은 1973년부터임
- 19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의 주의회는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많은 비판을 받았음
- 그 가장 중요한 이유로 지적된 것은 충분한 보수가 지급되지 못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지원인력이 제공되지 못 했다는 이유였음
- 이러한 비판 속에서 1973년 주의회 개혁을 위한 시민협의회(the Citizens' Conference on State Legislatures: CCSL)의 연구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의회개혁 노력을 촉진하게 되었음
 - CCSL은 연구보고서에서 주의회 개혁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5개 지표로서 기능성(Functional), 책임성(Accountable), 전문성(Informed), 독립성(Independent) 그리고 대표성(Representative)을 도출하여 평가지표를 만들었고(Citizens' Conference on State Legislatures, 1973), 이를 계기로 각 주들이 개혁에 돌입하여 지원인력을 확충하였음
 - 이때 각 주들이 추진한 개혁의 공통적인 요소는 9가지로 ①지원인력의 확충, ②의원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의 상승, ③의회의 회기를 필요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연장하는 제도 개선, ④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구조의 개혁, ⑤의사당 등 각종 시설의 확충, ⑥의회의 리더십 개혁, ⑦의회운영규칙의 개혁, ⑧의회의

- 규모 조정, ⑨의원들의 윤리적 행동을 보장하기 위한 윤리법 제정 등임
- 의회를 지원하는 인사과에서는 상임위원회와 합동위원회에 보좌관을 제공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며, 다음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보좌관을 배치시키고 있음
 - ① Chairman-Control Pattern: 위원회 의장이 보좌관을 모집하고 유지하는 방법
 - ② Leader-Chairman Control Pattern: 입법 지도부가 보좌관의 고용, 배정, 해고 등을 담당
 - ③ Party Caucus Pattern: 각 원의 다수당 혹은 소수당을 위한 연구 조사기관에서 보좌관을 차출
 - ④ Multi-Agency Pattern: 몇몇 보좌기관이 합동으로 상임위원회에 보좌관을 제공
 - ⑤ Central Agency Pattern: 중앙 보좌기관에서 차출된 전문가들을 각 위원회에 배정
- ※ 한국의 지방의회는 ⑤Central Agency Pattern에 가까운 형태임

2) 주-카운티-시 단위별 보좌지원과 인사권 운영

① 주(State)

§ 메릴랜드 주의회

- 의원수: 188명(상원 47명, 하원 141명) / 총남: 45명(도의원 40명, 교육의원 5명)
- 인구: 2010년 5,773,552명(2000년 5,296,486명) / 총남: 2,075,000명(2009년 기준)
- 면적: 32,133km² / 총남: 8,601km²

- 법률적으로 주지사 보다는 주의 회의권한이 상당히 강력함
- 메릴랜드주의회는 주헌법 제3조제항(Article III Section I)에 따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진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음
- 메릴랜드주의회는 지역구 대표만 있고 비례대표는 없음
- 메릴랜드주 의회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 아니라 보수를 받고 있음
- 그러면서도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이 허용됨. 실제 메릴랜드 주의회 의원들의 상당수는 자신의 직업을 갖고 있으며, 전업으로 의원직을 수행하는 의원들은 많지 않음
-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인력과 집무실 지원하고 있음
- 개인 혹은 공동 집무실을 보장 받고 개인 혹은 공동보좌관을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회기 이외에도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 받고 있음
- 상원과 하원 의원에 대한 보좌진 지원은 차이가 있음
- 상원의원은 개인별 1년 내내 보좌하는 상근보좌관을 1명 채용 가능하고, 이 상근보좌



관은 주정부의 공식적 직원이며 주정부로부터 보수를 받음. 그리고 회기 동안에는 보좌관을 1명 더 채용할 수 있는데, 이들은 임시직으로 전체 주의회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짐

- 하원의원은 개인적 보좌인력을 지원받지 않음. 그러나 회기 동안에 개인보좌관이 아닌 공동보좌관을 지원 받음
- 일반적으로 3인의 하원의원이 1인의 공동보좌관을 두고 있음. 이들은 주정부의 공식적인 직원이며 주정부로부터 보수를 받음
- 2001년 기준 메릴랜드 주의회 상·하의원 보좌인력(공동보좌관 포함)은 364명 이상임

※ 입법분석관

- 주의회 의원들을 보좌하는 입법보좌관은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임
 - 정보수집, 평가, 처리, 종합분석 능력을 통해 종전 의회 의원들이 로비스트나 행정부에 의존하던 정보수집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여 입법부가 더욱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발전하였음
- 입법서비스부(Department of Legislative Services)
 - 정당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기관
 - 의회사무처장은 정당 소속되어서는 안되고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이 공동으로 지명하고 임명
 - 2011년 현재 입법서비스부는 350명 이상의 전문 및 행정직원을 두고 있음
 - 주요부서는 입법회계감사실(the Office of Legislative Audit), 입법정보시스템실(the Office of Legislative Information Systems), 정책분석실(the Office of Legislative Policy Analysis)로 구성되어 있고, 정책분석실에는 재정 및 정책분석담당, 입법 및 위원회 지원담당,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지원담당이 있음
- 메릴랜드 주의회 입법서비스부는 매우 넓은 범위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주정부의 예산 및 재정에 대한 검토, 분석, 조사, 연구, 보고 등을 지원
 - 입법발의한 법안의 초안작성과 법률개정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
 - 법률조사, 검토, 분석, 연구, 보고 등의 서비스 제공
 - 일반적 조사 및 정책 분석 등의 서비스 제공
 - 주정부 각 기구들에 대한 성과감서 및 재정순응, 주정부 재정의 대차대조표 분석 등의 서비스 제공
 - 입법활동에 필요한 공공정보 서비스 제공

- 입법활동에 필요한 기록준비와 각종 출판 서비스 제공
- 입법정보시스템의 유지, 발전, 지원 등 서비스 제공
- 의회를 위해 재정, 인사, 분배, 원격 의사소통, 인쇄 및 복사, 의사당 시설유지 등의 일반적 행정서비스 제공

※ 한국의 국회사무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등한 수준임

② 카운티(County)

- 카운티 의회의 명칭, 의원 수, 선거방법, 임기 등에 대한 규정은 자치현장이 있는 지역은 현장에 따라 결정되나 현장이 없는 지역은 주정부에서 정한 헌법 및 자치 법령에 따라 결정됨
- 카운티의회는 보조기관으로는 의회 사무처와 의원 보좌관이 있음
 - 의회사무처(Clerk/Manager/Administrator Office)는 의회의 회의록, 의사일정을 전담하는 기구로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Clerk Office가 있거나 아니면 Manager/Administrator Office가 기능을 대신하고 있음
-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Clerk)는 카운티의 경우 대부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민선직이고 인구가 비교적 적은 자치단체에서는 의회에서 직접 임명하고 있음
 - 이는 의회에 대한 행정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고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함임
- 뉴욕주 12개 카운티 지역 중 11개 지역에서 의회 전담 공무원이 1-15명씩 있으며, 특히 Bergen, Spokane, Hillsborough 카운티 지역에서는 1-2명씩 개인보좌관을 두고 있음. 텍사스의 Cameron 카운티는 의회 의원들에게 개인 보좌관뿐만 아니라 지구당 사무실 비용까지 지불하여 주고 있음
- 그러나 인구 10만 미만인 작은 지역에서는 대부분 의회 의원을 별도로 지원하는 의회 전담직원이나 기구가 없고 대신 Manager 또는 Clerk 사무실의 직원들이 필요시 지원하고 있음

③ 시(City)

§ LA 시의회

- 의원수: 15명 / 총납: 45명(도의원 40명, 교육의원 5명)
- 인구: 2010년 3,792,621명 / 총납: 2,075,000명(2009년 기준)
- 면적: 1,301km² / 총납: 8,601km²



- 의회내에는 15개 상임위원회와 12개 특별임시위원회, 회의록 담당직원들이 있음
- 시정부의 모든 기능은 조례에 의해 15인의 시의원 수와 같게 15개 상임위원회로 분할되고 각 시의원은 3명의 시의원들로 구성되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장이 됨
-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입법보좌관을 위원회마다 1명씩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원 개인별 보좌관제도와는 상이한 의원전담직원으로서 한국의 전문위원제도와 유사한 형태임

✿ LA 의회분석실

- 의회분석실장은 시의회에 의하여 임명되어 의회 고유업무에 관해 전문적으로 보좌하고 있음
- 의회분석실의 수석입법조사관은 별정직 신분으로, 의원 2/3의 찬성으로 임명 또는 해임됨
- 수석입법조사관의 권한과 의무
 - 시의회와 위원회, 그리고 소속의원들의 입법활동과 관련한 조사 및 분석을 건의
 - 의회 상임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관계위원회의 상담관으로서 관련업무 수행
 - 의회의 지시가 있을 경우 의회가 구성한 임시 특별위원회에서 입법조사 관련업무 수행
 - 시의 선거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투표에 부칠 시현장 규정의 개정 및 수정안 마련
 - 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인을 포함 예산, 사무실 공간, 인사 그리고 필요에 따라 사무관리와 관계된 문제를 지원
 - 시의회 홍보관린
 - 선거위원회에서 직무수행 등

2. 일 본

1) 일반사항

- 일본은 기관통합형의 중앙정부의 구성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시장형의 분리형 기관 구성을 취하고 있음
- 행정체제 및 자치계층은 2층제로 도도부현-시정촌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으로 지방행정기관, 대표체제 등은 한국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음

2) 보좌기구 및 인력 운영

- 보좌하는 사무국의 역할이 중요시되어 있고, 의회 사무국의 평균적인 기구는, 총무과, 의사과, 조사과, 도서실이지만, 조사과를 정무 조사과등 정책입안 보좌를 강조하는 명칭으로 바뀌는 추세임
- 일본 지방의원은 1945년 이전에는 무급의 명예직이었지만 1945년 이후 유급제로 전환 하였음
 - 유급제 전환은 유능하고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지닌 지방의원을 유입함으로써 의결 기관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임
- 일본에서 지방의회 의원을 보좌하는 전문인력(한국의 전문위원)관련 제도는 없음
-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보수·수당·연금 등을 지급 받는 유급직 신분이므로 의원개인에 대한 보좌관 또는 특정 지원전담인력을 두고 있지 않음
- 또한 일본의 지방자치법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하여 의회의 서무에 종사한다고 규정 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보좌역할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고, 지방의회 사무기국 내 조사 분야 전담부서를 자치입법 내지 의안심사자료의 조사분석 등 의정활동의 지원인력을 두고 있음
- 따라서 일본에서는 의회차원의 보좌기능이 없고, 사무직원의 수도 적기 때문에 의원들은 의회활동의 전문성과 정책기능의 강화를 위해 개인적으로 보좌관을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음
- 개인적으로 보좌관을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유급직의 보수를 받는 것 이외에 개인후원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임
 - 정치자금규정법과 공직자선거법에서는 정치가에 대한 기부에 대해 규정하여 놓고 있음



- 일본은 개별적 지원이 아닌 의회사무국의 조직적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다만 의원 개인이 보좌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급보좌관제를 법률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의원당 1,800만원 가량의 의정활동 보조금으로 보좌관을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음
- 한편 정당차원에서 지방의원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제공함으로써 개인보좌관 형태로 운영할 가능성이 열려있음
 - ※ 일본은 개인보좌관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없지만 관행적으로 개인보좌관이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1945년 이후의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와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임

3) 인사권

-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배치와 구성권한은 의장에게 주어져 있으며, 의장은 사무국장과 서기장, 서기, 기타 직원 등의 임명권을 행사함(일본 지방자치법 제138조 5항)
- 기관대립형 기관구성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인사권을 의회에 귀속시키고 있어 집행기관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
 - 다만,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의 장(자치단체장)과 사전에 협의를 통한 인사교류 등으로 인적자원을 운영하고 있음
- 도쿄도의 경우, 의회국장 이하 의회국 소속직원의 임면권은 의장에게 있으며, 임용·계층제·급여·근무시간·기타 근무조건·지위 및 징계·연구·근무평정·복지 및 이익 보호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음
 - 그러나 의회국 직원의 실질적인 채용권한은 도지사에게 있고, 「출향(出向: 슛코우)」이라는 인사제도를 이용하여 집행부의 직원을 의회국에 보내고 있음
 - 그리고 가나와현의 경우, 의회사무직원의 인사는 의장의 추천으로 집행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공무원 교육훈련이 한국과 같이 신규임용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과 병행해서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시하고 있음
 - 직원의 전보가 3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집행부와의 인사교류도 한국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음
 - 요코하마의 경우, 사무국 직원의 채용은 원래 집행기관에서 채용되어 일시적으로 의회

사무국에 파견되는 제도로 운영되므로 형식적으로는 의장이 임면하게 되어 있지만 시장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의회사무국의 순환은 4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관례상 2년마다 순환하고 있음
- 이렇듯 실질적으로는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임면권 행사는 집행기관의 인사와 관련하여 의장에게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속기직 등 기능직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의장이 실질적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어 한국과 유사함
- 또한 집행기관과의 인사교류로 의회사무국 직원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차 집행기관에 돌아갈 것을 의식하여 의원들의 활동에 집행기관의 입장을 의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한국과 유사함

§ 일본 지방의회 사무기구 운영에 대한 문제점

- 의회사무국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지방의원들은 그들이 필요한 의정활동 정보를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측근이나 집행기관에서 얻고 있음
 - 의회사무국에 장기간 근무하는 직원이 없어 의사운영에 차질을 빚는 등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음(집행기관과의 잦은 인사이동)
 - 의회사무국 직원이라는 의식 부족으로 중립성 및 일체감이 결여되어 있음
- ※ 이 문제는 현재 한국의 지방의회 사무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문제임



3. 영 국

1) 일반사항

- 기관통합형정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영국은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과 의원정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 전통적인 기관통합형의 영국 지방정부는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영국의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정책결정의 주도권을 갖고서 집행기관 보다 우위에 있음
- 지방의회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집행기관으로 조직되어 있음
 - 위원회는 보통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 위원은 의회에서 선출되고 통상 의원으로 구성되지만 전문가도 포함될 수 있음

2) 보좌기구 및 인력 운영

- 의원수가 적고 전업적인 일부 미국의 경우 사무기구도 조직되어 있고 보좌관제도 채택하고 있지만 의원수가 많고 명예직을 표방하는 영국은 사무기구의 존재도 미약한 실정임
- 즉 한국과 같이 의회사무기구가 별도로 존재하기보다는 집행기관의 조직내에 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둬으로써 회기나 의사일정의 지원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 의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나 조직 운영권은 비록 시장의 권한이라고 해도 이는 의장을 겸직하는 시장으로서 갖는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 속하는 권한사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
- 외국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상근인 의장에게는 보조조직이 제공되며 의원 개인에 대한 보조조직은 자치구역이 처한 경제력과 수행하는 기능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음
- 의원수가 적은 의회는 보조조직이 없지만 규모가 큰 대런던의회(Greater London Council)인 경우, 사무조직의 규모도 크며 개인에 대한 조직도 제공되고 있음
 - 특히, 영국 지방의회 공무원의 신분은 집행부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
- 임명권과 직접적인 감독권이 의장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통합형 지방의회

유형에 속하나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권이 별도 운영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임

- 지방의회의 능력 제고를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외부 위촉위원을 참여시키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선출직인 지방의원외에 외부전문가를 지방의회에 참여시켜 의정활동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에는 지방의원의 수를 줄이고 상근유급직으로 전환하여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인력을 위촉하여 상임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토록하고 있음

3) 인사권

-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권이 별도 운영되고 있지만 기관통합형의 특징으로서 집행기관 소속의 각 국장이 의회소속의 각 소관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행정을 집행함
- 영국의 통합형 기관구성은 의회가 집행부에 깊숙이 관여하여 집행기관의 조직·인사권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기관운영도 의회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어 의회의 권한이 강한 기관구성형태임
- 따라서 영국 지방의회는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이 의회의장을 겸직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인사권 독립이라는 측면 보다 인사권이 통합되어 있고 더 나아가 의회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특징이 있음

§영국 에딘버러시

- 지방의회운영을 위한 각 종 행정사무처리는 9개 행정부서 중의 하나인 총무국에서 관장함
- 그리고 의원보좌관제는 채택하지 않고 있음. 그 이유는 지방의원의 기능과 역할이 행정조직을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정의 방향과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역할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전문적인 조언은 관련 행정부로부터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기 때문임
- 다만 지방의회 내에서 진행되는 각 정당별 활동을 행정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각 정당별로 소수의 행정공무원을 배속하여 근무케 하고 있음. 이들 공무원은 시예산에서 급여가 지출됨



4. 독일

- 독일은 “게마인데(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동체의 모든 사항을 자기의 책임으로 규율하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게마인데 연합도 그의 법률상의 임무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기준에 따라 자치권을 갖는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확실히 보장하고 있음
- 게마인데 주민총회가 의회의 지위를 대신할 수 있고, 지방의회에 모든 결정권이 집중되어 있으며,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행정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 이 점에서 독일의 지방의회는 국회와 같은 입법기관은 아니고 행정기관의 일부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
- 지방의회에는 독자적인 사무국을 두고 있음
- 대도시의 경우에는 담당관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의정활동 보좌인력으로 하는 전문가 그룹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임과 동시에 집행기관을 겸하고 있으므로 의회의장은 집행기관의 장이 됨과 동시에 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지방의 고유사무와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갖음
- 따라서 기관통합형에 가까운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비중이 크지 않아 개인보좌관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인사권 또한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음
- 사무직원의 주요업무는 회의상황의 기록이며 그 임명은 의장과 시장이 임명하는 경우와 집행기관의 공무원을 겸직하는 등 다양하나 그 숫자는 많지 않음

5. 국가별 지방자치제도 및 의회운영 비교

-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헌법 또는 주헌법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규정해 놓고 있는 반면, 영국의 경우 중앙의회에서 규정하여 상대적으로 의회 자율성이 약한 경향임
- 자치계층은 일본의 경우 2계층제이지만,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나 영국과 같이 단일 국가이면서도 연방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는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단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state)-카운티(county)-시(city)의 3계층로 인식되고 있음. 그러나 카운티는 자치구역의 단위로 그 규모의 편차가 큰 편임
- 지방행정기관은 미국과 독일의 경우 주(state)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영국은 의원내각제의 영향으로 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의 집행부에서 지방행정을 담당하고 있음
- 대표제제는 선거방식과 연관된 것으로 비례대표제를 사용하는 독일을 제외한 미국, 일본, 영국, 한국은 다수대표제를 사용하고 있음
- 기관구성형태는 미국의 경우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고, 일본과 한국은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영국과 독일은 기관통합형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의회사무조직의 인사권은 기관대립형의 경우 의회에서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본의 경우 집행부(자치단체의 장)와 상의하여 운영하고 있음. 영국과 독일은 기관통합형으로서 자치단체의 장과 의장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인사권 분리에 대한 논의가 모호함
 - 한편 한국의 경우 기관대립형 이면서도 일본과는 다르게 집행부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 개인보좌관제는 미국의 경우는 주 상원의원 및 시의원은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개인 또는 정당차원에서 보좌관을 활용하고, 영국은 규모가 큰 경우에만 보좌관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일은 전문가 그룹을 통해 활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 미국 | 일본 | 영국 | 독일 | 한국 |
|--------|--------|------------------|----------------|--------|------------------|
| 법적 근거 | 주(州)헌법 | 헌법 | 중앙의회 | 주(州)헌법 | 헌법 |
| 자치계층 | 다양 | 2계층 | 다양 | 다양 | 3계층 |
| 지방행정기관 | 다양 | 자치단체 집행부 | 의회 | 다양 | 자치단체 집행부 |
| 대표체제 | 다수대표제 | 다수대표제 | 다수대표제 | 비례대표제 | 다수대표제 |
| 기관구성형태 | 기관대립형 | 기관대립형 | 기관통합형 | 기관통합형 | 기관대립형 |
| 인사권 | 의회 | 의회 (집행부 협의) | - | - | 집행부 (의회의장 협의) |
| 개인보좌관제 | 운영 | 개인 또는 정당차원 운영 | 운영 (큰 규모에만) | 전문가 그룹 | 미운영 |

MEMO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13년 9월 10일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
- ❖ 전 화 : (041) 635-5121
- ❖ 인 쇄 처 : 한샘문화사 ☎(041) 333-1006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354-3

